

1. 개정(제정)이유

관련법률의 개정(2025. 4. 1.)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평가, 운영 위원회 운영,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을 신설 (안 13조의 8)
- 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근거 등을 신설 (안 13조의 9)
- 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신설(안 13조의 10)
- 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 (안 13조의 1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 3) 행정규제 :

부령 제 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8조의3”를 “법 제18조의4”으로 한다.

제13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법 제18조의3”를 “법 제18조의4”으로 한다.

제13조의7제4항 중 “법 제18조의3”를 “법 제18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8(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
2.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3.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13조의9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재지정”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9(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을 위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8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상대평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0(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2. 제13조의9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1(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6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3
제13조의3(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13조의3(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3
제13조의4(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등의 위탁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의4(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등의 위탁방법) ① --- -----법 제18조의3-----
제13조의5(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기	제13조의5(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4

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4-----
제13조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8조의4-----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법 제1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 13조의6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3조의5제1항 또는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② -----법 제18조의4-----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			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4-----			1.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3제3호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법 제18조의4제3항----- ----- -----.			2.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신 설>	제13조의8(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3.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13조의9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재지정”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			제13조의9(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을 위한 평가)
			<신 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8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신 설>

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상대평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10(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2. 제13조의9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 설>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3조의11(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어

- 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3조의8제1항 관련)

1. 대상기관: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를 두고 어린이 전문재활치료를 수행하는 기관
2. 인력 기준
 - 가. 필수인력은 재활의학과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이며, 선택인력으로 임상심리사를 둘 수 있다. 또한 필수인력과 선택인력을 고려하여 다직종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의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인력	기준	다직종 팀구성
필수 인력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4 개 직종 이상
	물리치료사	1인 이상	
	작업치료사	1인 이상	
	간호사	1인 이상	
	* 입원(낮병동 포함) 병상을 운영할 경우		
	언어재활사	1인 이상	
	사회복지사	1인 이상	
선택 인력	임상심리사	1인 이상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위 인력 기준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시설 기준

- 가. 어린이전문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각 치료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장비 기준

제3호에 따른 치료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18세 이하 연환자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수 이상이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개설자(대표자)	생년월일
	기관 소재지(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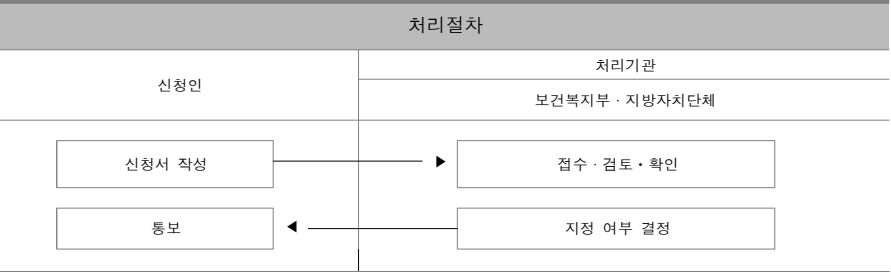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 지방자치단체
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인력 · 시설 ·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인력(산부인과 코디네이터, 수어통역사) 채용 관련 사실 증명 서류 3.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제 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요양기관 기호:

3. 대표자: (생년월일:)

4. 기관 소재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개설자(대표자)		생년월일	
기관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취소 요청 사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검토 · 확인	→
		결과통보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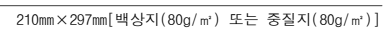
(의료기관 명칭:)

2. 의료기관 경영의 특성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3. 어린이 재활의료 기관의 운영계획	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
	나. 의료인력 등 유지 방안
	다. 대상 환자 확보계획 등

4. 참고자료: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현황 자료 등



제 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

1. 요양기관 기호:

2. 기관명:

3. 개설자: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4. 소재지:

5. 지정 기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